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3월 5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3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년 3월 15일) 상정
- 제1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년 3월 20일)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 제안이유

-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9466호, 2006. 5. 8. 공포, 2006. 5 9. 시행)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바뀔에 따라 국토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며,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의 건축규제 개선을 위한 주택 연면적 비율 조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건축법 시행령」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함.(안 제30조 내지 제45조, 제47조, 제52조, 제53조, 제57조 내지 제59조, 제62조 및 제63조)
- 재래시장의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용적률을 500퍼센트 이하

에서 400퍼센트 이하로 정함.(안 제68조제3항)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건축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비율을 70퍼센트에서 90퍼센트까지 완화함.(안 제68조제6항 신설)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이 경과한 후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도록 정함.(안 제77조제2항 내지 제4항)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현행 1필지당 1,000원에서 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 한해 1,500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80조)
-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 특례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조례 제1973호 부칙 제9조)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입법예고 내용과 개정안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시민에게 입법예고 하였으나 자세한 내용까지 알리지는 못하였음.
○ 입법예고시 이의신청 또는 관계 부서 간 제출된 의견은?	○ 일반시민으로부터 제출 의견은 없고 원미구청에서 검토의견이 공문으로 이의신청이 있어 조례에 반영하였음.
○ 입법예고시 제68조 재6항 및 1호 내지 3호를 누락시킨 이유?	○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입법예고 하면서 많은 부분이 개정됨으로써 사전에 숙지를 못했음. 그러나 원미구청에서 검토의견이 있어 금번 개정안에 포함시켰음.
○ 도시계획 조례(안)중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의 비율이 현행 70%에서 9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하면서 제출된 조례안과 내용이 상이한데 이는 시민의 의견 개진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보이는데?	○ 금번 도시계획 조례안 중 상업지역내 주거용 건축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시민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므로 개정안 포함시켰음. 앞으로는 입법예고시 자세한 내용까지 포함시켜 많은 시민들에게 의견을 청취하도록 조치하겠음.
○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비율 완화(70%→90%)는 타 자치단체와 비교시 더 많이 완화한 규정인데?	○ 상업지역 중 낙후된 부천역 주변, 역곡역 주변, 원종동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부동산 경기의 안정화 측면과 상업지역 내 주거 기능을 고려하여 공개공지를 확보 쾌적성을 유지시켰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정 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98
의결 년월일	2007. 3. 22

제안년월일 : 2007. 3. 20

제안자 : 건설교통위원장

1. 수정이유

-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는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부천시 도시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임.
-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이해당사자 및 많은 시민에게 의견을 청취하여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당초 입법예고안과 개정안과의 차이가 있어 앞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비율은 90퍼센트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적율은 제5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적용한다” . 에서 “이 경우 용적율은 제5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적용한다” 를 삭제한다

(안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8조제6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68조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비율은 90퍼센트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적율은 제5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적용한다.” 에서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비율은 90퍼센트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로 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1.~5. (생 략) <u><신 설></u></p>	<p>1.~5. (현행과 같음)</p> <p>⑥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비율은 90퍼센트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은 제5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2.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3. 미관지구 안의 경우 도로와 접한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4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물 배치(미관지구 외의 경우에는 도로 전면부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 	<p>1.~5. (개정안 같음)</p> <p>⑥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비율은 90퍼센트 미만으로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수정안 포함]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중 “제1종근린생활시설중”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으로 하고, 동조 제2항제2호중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으로 하며, 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타종시설 및 옥외 확장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제31조제1항제3호중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영 제71조제1항제2호 별표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제32조제1항제3호중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②영 제71조제1항제3호 별표 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단란주점, 안마
시술소·안마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2천제곱미터 이
하인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
프연습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
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
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
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제33조제1항제3호중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2항제1호·제3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13호 내지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안마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에 한한다)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적 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제34조제1항제3호중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2항제1호·제3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14호 내지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안마원,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에 한한다)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오피스텔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제35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②영 제71조제1항제6호 별표 7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동호 가목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내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매매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71조제1항제7호 별표 8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 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용도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 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용도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②영 제71조제1항제7호 별표 8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과 장례식장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동호가 목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내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제외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 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용도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 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용도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②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

된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동호 가
목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
설, 시내버스차고지내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
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71조제1항제9
호 별표 10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
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 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용도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영 제71조제1항제9호 별표 10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 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

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용도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동호가목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

설, 시내버스차고지내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 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71조제1항제10호 별표 1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②영 제71조제1항제10호 별표 1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 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용도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 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용도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71조제1항제11호 별표 1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나목·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②영 제71조제1항제11호 별표 1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가목·나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

제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71조제1항제12호 별표 1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

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②영 제71조제1항제12호 별표 1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설
소·안마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다만, 「주택법」 제
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및 가축시설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71조제1항제13호 별표 14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다만,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②영 제71조제1항제13호 별표 1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설
소·안마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71조제1항제14

호 별표 15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②영 제71조제1항제14호 별표 15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증·개축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71조제1항제15

호 별표 16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다목적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②영 제71조제1항제15호 별표 16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 및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

산업용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71조제1항제16호 별표 17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
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
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
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②영 제71조제1항제16호 별표 17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

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다.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제조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 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설 소·안마원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및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타이 있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저장탱크용량이10톤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나. 위험물제조소
 - 다. 위험물저장소
 - 라. 유독물보관·저장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가. 주차장
 - 나. 주유소와 함께 설치하는 자동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감화원 및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촬영소,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제12호”를 “제16호”로 한다.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심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갇셈·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3조제3항제5호중 “제1종근린생활시설중”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으로, “제13호”를 “제17호”로, “제15호”를 “제19호”로, “처리시설중”을 “처리시설 중”으로 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설소·안마원,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교도소
 -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8조제3호 내지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6호 내지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공회당·회의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가. 주차장
 - 나. 주유소와 함께 설치하는 자동세차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교도소
 -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9조제2호중 “제13호”를 “제17호”로 하고, 제3호중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를 “제25호의 발전시설”로 한다.

제6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제2호중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으로 한다.

①영 제78조제1항 별표 2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제63조제1항제1호중 “제11호”를 “제15호”로 하고, 제2호중 “제12호”를 “제16호”로 하며, 제3호중 “제15호”를 “제19호”로 한다.

제65조제3항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주거지역”으로 한다.

제68조제3항 본문 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하고, 동항 단서 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로 하며, 동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동일건축물인”을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및 상동 지구단위계획을 제외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비율은 90퍼센트 미만으로 할 수 있다.

1. 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2.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3. 미관지구 안의 경우 도로와 접한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4미터 이상 이

격하여 건축물 배치(미관지구 외의 경우에는 도로 전면부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

제77조중 “회의 및 회의록은”을 “회의는”으로, “참여 또는 공개”를 “참여”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13조 및 영 제113조의2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이 경과한 후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③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제2항 및 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0조중 “법 제132조제2항”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으로, “1,000원”을 “1,000원(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한다.

조례 제1973호 부칙 제9조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심의·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 등을 포함한다)·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30조 내지 제6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설계변경시 건축제한은 개정규정에 의한다.